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다만 사업장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즉시 처리)
------	-----	--

신고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사유

변경예정일(변경일)

변경내용	기 존 사 항							변 경 사 항						
비산배출시설 변경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수량	주요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수량	주요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변경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배출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민원실)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비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고인